

2024년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 및 사업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Preface

대한민국은 2022년에 173억 달러 수출 수주에 이어 2023년은 130억 달러로 명실상부 방산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서고 있으며, 수출 대상국도 4개국에서 12개국으로 증가하고 수출 품종도 6종에서 12종으로 2배 증가하는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수출 하는 글로벌 방산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방위력개선사업을 통해 개발된 대한민국의 무기체계 능력과 성능이 높아지고 해외에서도 우리의 무기체계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분야에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국방 첨단전략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 시책 및 사업」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관심분야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와 지원사업을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방산육성지원사업, 수출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방산기업원스톱지원센터와 국방벤처센터에 대한 소개를 포함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고 무기체계와 국방 첨단전략산업의 융합을 통해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세계 7위까지 높이는 등의 첨단산업화를 통해 미래전장을 주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핵심기술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방첨단산업분야의 우수기술 보유기업을 발굴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해 이들이 방산생태계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방위산업진흥국장 **김일동**

I. '24년 추진 목표 및 예산 현황	06
II.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 제도	
① 전년도와 달라지는 점	10
② 도움이 되는 제도	11
1. 방산원가 제도	11
2. 방산물자/업체 지정 제도	13
3. 절충교역	16
4. DQ마크 인증제도	18
5.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	19
6. 제도 컨설팅 지원(방산기업원스톱지원센터)	20
7. 사업과제 발굴 및 기술지원(국방벤처센터)	22
III. 글로벌 방산기업 육성 사업	
①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26
② 방산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28
③ 국방벤처 지원사업	30
④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사업	32
1. 핵심부품 국산화	32
2. 수출연계부품 국산화	34
3. 전략부품 국산화	36
4. 일반부품 국산화 시험평가	38
⑤ 방산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39
1. 계약학과 지원사업	39
2. 전문인력 양성사업	41
3. 특성하고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	43
⑥ 방위산업 중소기업 대상 SW 분석도구 무상지원 사업	45

IV. 국방 첨단전력산업 육성 사업

① 방산혁신기업 100 지정 및 전용지원사업	48
②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사업	50
③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52

V. 방위산업 수출 지원사업

①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54
② 방산전시회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56
③ 유망 수출품목 발굴 지원사업	58
④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60

VI.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사업

“중기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①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64
② 성과공유제	69
③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71
④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사업	74
⑤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77
⑥ 기술자료 임치제도	79
⑦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	81
⑧ 상생누리 플랫폼	83
⑨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85

※ 연간 사업 일정표



2024년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 및 사업

01

C·H·A·P·T·E·R

'24년 추진 목표 및 예산 현황

→ 추진 목표 및 중점 과제



3대 분야 10개 중점 과제

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세계 일류기업으로 도약 지원

- ①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한 세계 일류 중소·벤처기업 육성
- ② 부품국산화 지원을 통한 핵심 소부장 경쟁력 확보 및 방산 기초체력 강화
- ③ 지속가능한 방산수출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②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방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

- ④ 방산 혁신기업의 국방첨단전략산업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 추진
- ⑤ 국방첨단전략산업 5대분야 중심의 혁신 R&D기업 집중 육성
- ⑥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국방 첨단전략산업분야의 고용 창출 기여
- ⑦ 첨단전략분야 방산혁신펀드와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 집중 지원

③ 방산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조성 및 상생협력 추진

- ⑧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강화를 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추진
- ⑨ 대·중소기업 혁신역량 공유를 통한 방산 상생·혁신 생태계 조성
- ⑩ 지역 거점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밀착 지원

→ 정부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순번	지원 사업명	예산('24년)
1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1,236.69
2	방산중소기업 컨설팅사업	7.2
3	국방벤처 지원사업	109.94
4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145.74
5	방산혁신기업100	390.21
6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2
7	방산혁신클러스터	125
8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16.42
9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751.92
10	방산전시회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16.35
11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27.72
12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23.2



2024년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 및 사업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및 제도

- ① 전년도와 달라지는 점
- ② 도움이 되는 제도
 - 1. 방산원가 제도
 - 2. 방산물자/업체 지정 제도
 - 3. 절충교역
 - 4. DQ마크 인증제도
 - 5.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
 - 6. 제도 컨설팅 지원(방산기업원스톱지원센터)
 - 7. 사업과제 발굴 및 기술지원(국방벤처센터)

1

전년도와 달라지는 점

→ 사업 분야

-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신설
 - 급격한 방산 수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부품공급 중소기업의 금형·생산설비 고도화 등 생산성 향상 지원
-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 혜택 강화
 - 국방첨단전략산업 기업의 기술 매칭과 통합을 통한 Package Project* 및 부스** 마련을 통한 국내·외 전시 및 홍보 등 시범 추진
 - * 국방첨단전략 5대 분야의 다양한 기술 융합 사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 방산혁신기업100 기술 통합을 통해 첨단전략산업분야 기술이 낙후된 국가의 방산전시회 참여 등 국내·외 기술교류회, 우수기술, 제품 홍보 추진

→ 제도 분야

- 국방첨단전략산업 5대분야 전문기업 지정 제도 추진
 - * 개발품우선구매, 착중도금지원, 기술개발 과제 시 가점 등 방산업체에 준하는 혜택과 국가 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신규지정(기재부)을 통한 세제혜택 부여 등
-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지원사업」의 제도 및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과제 성공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 방안 마련
 - * 과제선정 평가 시 수출가능성 판단 기준(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을 정량화 및 구체화 하여 우수한 과제, 기업 선정 추진
- 방산분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
 - 방산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및 방사청/중기부 사업참여 우대, 방산분야 상생협력기금 출연 인센티브 확대 등 추진
 - *상생협력 우수기업의 중기부 사업 참여시 우대 방안 마련
 - *방산육성 지원사업 공동운영규정 등 관련법규 가점 체계 개편 검토

2 도움이 되는 제도

1 방산원가 제도

→ 개요

방산물자 등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기준가격을 원가계산 방식에 의해 결정하는 제도

→ 주요 내용

• 방산원가 제도 개요

- 국가가 특수규격, 주문생산 등의 특수성에 따라 시장가격이 형성되기 어려운 물품·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방식으로 적정한 가격 산정
- 방산물자 등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조달 필요성과 안보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국가계약과 다른 별도의 원가계산 기준 적용

관련법규

- | | |
|------|--|
| 일반물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 방산물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방위사업청 훈령) •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방위사업청 훈령) |

→ 방산원가 적용 대상

- 방산물자 또는 연구·시제품 생산에 대해 방위사업청(각 군, 국과연 포함)과 계약하는 경우 적용
- 상기 계약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방산원가에 준하는 하도급원가 기준 적용

• 방산원가 구성체계



• 방산원가 특성(일반원가 대비)

- 계약 대상업체의 실제 노무비 단가를 기준으로 노무비 계산
- 계약의 위험도, 업체의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이윤 반영
- 방산물자 생산을 위해 투자된 타인자본 및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보상

•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방산원가 특례(변경)

- 대상 :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견기업
- 이윤 산정 시 일부 항목에 대해 대기업 대비 비율 가산
 - 방산경영안정보상액 산정시 매출액영업이익률 조정계수 0.1%p 가산
 - 수출확대보상액, 연구개발보상액을 대기업 대비 각 50%씩 가산
 -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외주가공비, 국산화 재료비에 10%씩 가산
- 원가관리체계 인증 유효시의 총원가에 0.5%p를 가산하여 보상

문의처

• 방위사업청 원가관리과 02-2079-6954

2 방산물자/업체 지정 제도

→ 개요

• 지정신청 대상



-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이 필요한 물자
-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 중 군용으로 연구개발 중인 물자로서 개발이 완료된 후 무기체계로 채택될 것이 예상되는 물자
- 그 밖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자
-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을 갖춘 자

• 지정 효과

혜택

- 「국가계약법」 수의계약 대상
- 「방위사업법」 정부우선구매대상
- 방산원가 적용 등

의무

- 생산시설유지의무
- 주요방산물자 수출 시 사전 승인
- 방산업체 매매·이전 시 사전 승인
- 방산물자의 의무적 공급

➔ 방산물자 지정신청 절차

• 방산물자 지정신청 절차

- 방산물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합니다.



• 방산물자는 주요 방산물자와 일반 방산물자로 구분됩니다.

<주요 방산물자 : 제35조 2항에 해당하는 물자>

- 총포류 및 그 밖의 화력장비
- 전차·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 유도무기 / 항공기 / 함정 / 탄약
- 레이더·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전자장비
- 전투공병장비 / 화생방장비 / 지휘 및 통제장비
-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열상장비
-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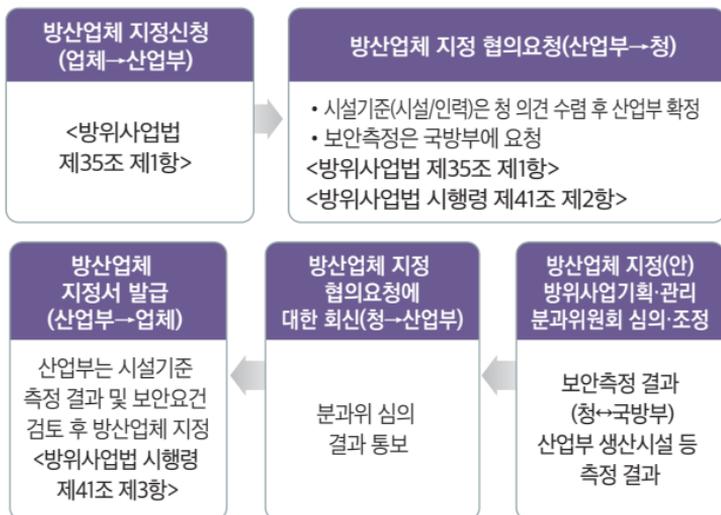
➔ 방산업체 지정신청 절차

• 방산업체 지정신청 절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위사업청과 협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합니다.

<방산업체 지정 요건>

-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생산, 품질 검사 및 기술인력 등 일정한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며,
- 시설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며, 보안요건은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측정합니다.



문의처

•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02-2079-6415

3 절충교역

→ 개요

국외로부터 무기 등을 구매할 때, 국외업체가 우리나라에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할 것으로 하는 교역으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수출에 기여 (방위사업법 제20조)

* 반대급부: 핵심기술 이전, 국내업체에 부품제작·수출 의뢰, 합작투자 등

미화 1천만불 이상의 무기체계 국외구매 사업에 대하여 경쟁사업은 기본계약 예상금액의 50% 이상, 비경쟁사업은 30% 이상의 절충교역 의무가치를 부과

→ 주요 내용

• 절충교역 유망목록을 확대

- 국외 업체와 국내 중소기업 간 미스매칭을 해소하고자 유관기관 협업 (국기연·방진회, 산업부, 중기부 등)을 통해 유망목록을 확대하고, 온라인 전시관(defense-korea.com)을 통해 홍보

* 중소기업 정보 및 대상품목, 기술분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목록화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274개 업체 1,190개 품목·기술 확정

• 사전 가치축적 제도 활성화

- 평상시 은행에 돈을 저축해두었다가 필요한 경우 찾아서 쓰는 것처럼, 국외 업체가 국내업체들과 평소에 협력한 실적(부품제작, 수출, 공동개발 등)을 축적해두었다가 향후 수주한 사업에 절충교역 가치로 자유롭게 활용하는 제도
- '18.12월 도입 이후, 총 32건(18.26억\$)의 가치축적 합약서 체결

• 대·중견 및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

- 대·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부품제작·수출 물량 등을 제공 시 중소기업 가치 승수를 인정하여 상생협력 유인을 강화

•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제도 및 참여절차 안내, 분야별·국외업체별 유망분야 소개, 업체별 우수 기술·품목 발굴, 컨설팅 업체의 수출성과 창출을 위한 사후관리 등
- * '23년 92개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컨설팅 제공

• 절충교역 일대일 수출상담회

-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방산기업과의 일대일 수출상담 기회 제공
- * '23년 2회 절충교역 수출상담회 개최하여, 57개 국내 중소기업과 13개 국외업체 간 수출상담 실시

➔ 사업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문의처

•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 02-2079-6344, 6353

4 DQ마크 인증제도

→ 개요

방산분야 우수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여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제도

→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방산분야 중소/중견/대기업
- **지원 품목** : 수출하려는 방산물자등과 군수품(수출용으로 개조개발된 제품 포함)으로서 국방규격, 구매국의 요구사양 또는 업체규격 등 제품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제품
- **지원 내용** : DQ마크 인증서 발급 및 인증제품의 수출지원
* 인증서 발급 : 국방기술품질원, 인증제품 수출지원 및 홍보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지원 규모** : 인증획득 시 기업 부담 비용 없음

→ 신청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 인증절차



• 신청·접수

- 인증신청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

문의처

- | | | |
|-------------|-----------|--------------|
| • 방위사업청 | 국제협력총괄담당관 | 02-2079-6378 |
| • 국방기술품질원 | 품질기획실 | 02-961-1406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수출개발사업팀 | 055-751-4898 |

5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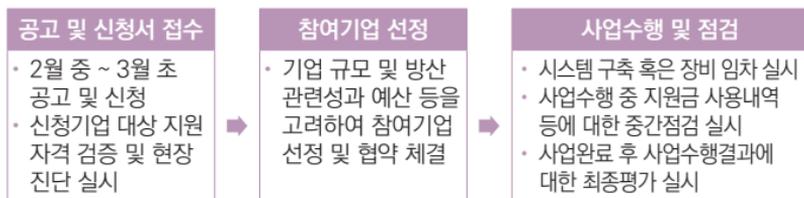
→ 개요

방산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방산분야 중소·중견기업과 그 협력업체
- **사업 구성**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과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사업으로 구성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 기업의 기술보호수준 진단 후, 맞춤형 기술보호체계를 제시하고 그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
* 구축 비용의 50% ~ 80%, 1억 원 한도 내 지원
-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 기업의 보안관제에 필요한 통합보안장비*의 임차료 지원**
* 통합보안장비(UTM : Unified Threat Management)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 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보안솔루션
** 임차료 12개월분, 250만원 한도 내 지원

→ 사업 진행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문의처

•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 02-2079-6976

6 제도 컨설팅 지원 - 방산기업원스톱지원센터

→ 개요

현장 중심의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일원화된 지원창구 마련을 통한 방산 육성/수출 지원 및 방사청 제반업무에 대한 종합 지원을 위해 방산기업 원스톱 지원센터 설립(2021.6.1.)

※ 구미센터(2명), 창원센터(2명), 판교센터(2명)

→ 주요 내용

• 지원분야



• 주요 지원내용

- (방산육성)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 및 방위산업 진입 희망 기업에 대한 참여 절차·일정 소개 등 제반 관련사항 지원
- (우수기업 발굴)권역별 찾아가는 컨설팅 및 국방벤처센터 등과 협력하여 우수기술 보유기업 발굴 및 방위산업 진입 지원
- (제도소개)청 제반 정책/제도 개선사항 소개 및 업체 간담회 개최
- (방산수출)방산수출 희망기업의 수출 달성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 (절충교역)중소·벤처기업의 절충교역 참여 희망시 컨설팅 지원
- (원가산정)기존 현장원가사무소에서 수행한 원가 산정 지원
- (규격열람)청(표준자원관리팀)으로 신청·승인된 국방규격 열람 지원
- (대외협력)지자체, 국방벤처센터 등 방산관련 유관기관 업무협력
- (현장지원)대내외 기관(업체) 요청시, 청 제반업무 현장 지원

☞ 문의처

◆ 구미 방산기업 원스톱 지원센터



주소: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웨어러블디바이스센터 4층

전화: 054-451-7645, 7648

◆ 창원 방산기업 원스톱 지원센터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137번길 9

전화: 055-281-3942~3

◆ 판교 방산기업 원스톱 지원센터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 1동 5층

전화: 031-781-9450~1

7 사업과제 발굴 및 기술지원 - 국방벤처센터

→ 개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속 지역센터로, 독자적으로 국방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창의적이고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여 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군 사업 과제 발굴, 기술 지원, 정보 제공 등 지원

→ 운영현황 ('24년 기준)



CENTER

전국 10개 센터 운영

COMPANY

637개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



→ 주요 업무

•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기반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

- (맞춤형 연구개발 과제기획) 협약기업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국방 과제 발굴
- (현장밀착 기술지원/개발관리) 국방에 활용 가능한 기술·제품 개발 (개발비용, 시험평가 등) 지원 및 국방기술자료·사업정보 제공
- (홍보/마케팅 지원) 인증,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 국방 전시회 참여 및 판로 개척 등 마케팅 지원, 국방관련 대외매체 통한 홍보지원
- (협력 네트워크) 국방부, 각 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주요 방산 업체와 각종 업무교류 등을 통한 국방네트워크 유지

부 의 처

부산국방벤처센터	부산시 사상구 엄궁로 70-16 부산TP	051-331-2616
경남국방벤처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로 7길 21	055-254-1984
전북국방벤처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 전북TP	063-212-9881
대전국방벤처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KAIST	042-863-8901
광주국방벤처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333 광주TP	062-974-4871
구미국방벤처센터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054-465-7690
전남국방벤처센터	전남 순천시 해룡면 울촌산단4로 13 전남TP	061-727-6710
울산국방벤처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14	052-276-9284
충남국방벤처센터	충남 논산시 대학로 121 건양대학교 의료공학관	041-733-3890
충북국방벤처센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97 충북과기원	043-215-9762



2024년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 및 사업

글로벌 방산기업 육성 사업

- ①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 ② 방산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 ③ 국방벤처 지원사업
- ④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사업
 - 1. 핵심부품 국산화
 - 2. 수출연계부품 국산화
 - 3. 전략부품 국산화
 - 4. 일반부품 국산화 시험평가
- ⑤ 방산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 1. 계약학과 지원사업
 - 2. 전문인력 양성사업
 - 3.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
- ⑥ 방위산업 중소기업 대상 SW 분석도구
무상지원 사업

1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 개요

방산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

→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대상기업 :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충족
 -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이거나,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수출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
- 개발과제 : 무기체계 적용 및 수출 가능한 기술/부품/제품

• 지원 내용

- 최대 3년 30억원(사업비의 75% 이내)
- 개발비 및 해외시장개척비(마케팅비) 지원

• 지원 규모 : 139.89원 ('24년 예산 기준)

→ 신청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 **제출서류** : 과제수행계획서,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 등

→ 추진 일정

- 주관기업 공모 및 선정 : 2월 ~ 5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6월
- 과제 관리 : 6월 ~

문의처

- 정책·제도: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02-2079-6477
- 기획·선정·평가·관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사업총괄팀 055-751-4835

2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 개요

기술력 있는 민간 중소기업의 방산 신규 진입 및 방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야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방산 참여를 희망하는 기술력을 갖춘 민간 중소·벤처기업 또는 방산 분야에 활동 중인 중소·벤처기업
- **지원 분야 및 내용**

지원 분야	지원 내용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및 부품국산화개발 • 공정·품질·설비개선 및 국방 관련 품질경영체제 구축 • 공동기술개발·기술협력, 규격화·목록화, 기술보호체계 구축 등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마케팅, 사업전환, M&A, 경영혁신 • 원가관리체계 구축 등의 방산원가 관리 등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융자신청 등 지원제도 •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등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 절충교역 등 법률 상담 •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등

• 지원 규모

- 기업당 최대 3천만원 정부지원 (총 소요비용의 75%)

* 기술컨설팅의 경우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지원

➔ 신청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 **제출서류** : 과제수행계획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 추진 일정

- **컨설팅 지원대상기업 모집/선정** : '24. 5월, 8월, 11월

* 모집/선정 시기는 변동가능

문의처

- 정책·제도: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054-451-7648
- 기획·선정·평가·관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 055)751-4862~3

3

국방벤처 지원사업

→ 개요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우수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

→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대상기업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중 국방벤처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을 희망하는 기업
- 개발과제 : 국방분야 적용 가능한 기술/부품/제품

• 지원 내용

- 국방벤처 지원사업 : 최대 2년 3억원(사업비의 75% 이내)
-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 최대 3년 20억원(사업비의 75% 이내)

• 지원 규모

- 99.6억원 ('24년 예산 기준)

→ 신청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 제출서류

- 과제수행계획서,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국방벤처센터 사업협약 희망 협약서, 참여제한사항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 추진 일정

국방벤처 지원사업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공고 : 2월 ~ 3월 • 선정평가 : 4월 ~ 5월 • 지원과제·기업 선정 및 지원협약: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과제 선정 : 2월 ~ 6월 • 주관기업 모집공고 : 7월 ~ 8월 • 선정평가 : 8월 ~ 9월 • 주관기업 선정/협약 : 10월

문의처

- 정책·제도: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02-2079-6477
- 기획: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기획팀 055-751-4956
- 선정: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기술평가팀 042-220-5361
- 관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사업총괄팀 055-751-4824

4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사업

1 핵심부품 국산화

→ 개요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촉진, 방산분야 우수 중소기업 육성 및 무기체계 수출 확대를 위하여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과제를 선정 후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대상품목 : 체계개발, 양산단계 및 운용유지단계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 도입 핵심부품(기술협력생산 부품 포함)

• 과제선정기준

- 핵심부품 여부, 기술 파급효과, 경제성(내수 중심) 등

• 지원 내용

- 개발기간 : 초대 5년
- 지원금액 : 최대 100억원 한도 내 기업유형별 차등* 지원
 - * (대기업) 총개발비의 50% 이내, (중견기업) 총개발비의 70% 이내, (중소기업) 총개발비의 75% 이내
-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용은 100% 정부지원(지원금액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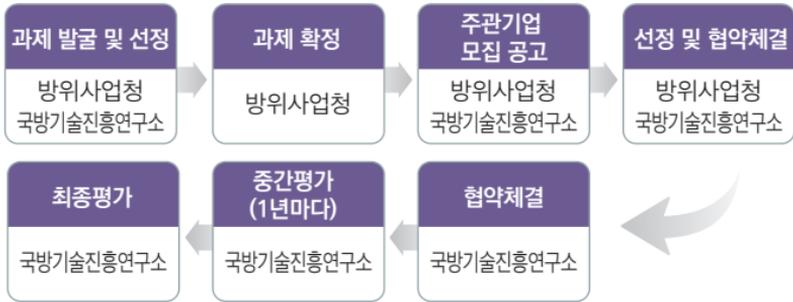
• 지원규모

- 455.33억원 ('24년 예산 기준)

• 혜택

- 연구개발서확인서 발급 시 수의계약(최장 5년)
- 과제 참여 체계업체에 상생협력확인서 발급

→ 신청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과제수행계획서,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등

→ 추진 일정

-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과제선정 : 3월
- 주관기업 공모 및 선정 : 4 ~ 6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7월
- 사업착수 : 7월 ~

문의 의 처

- 정책·제도: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02-2079-6443
- 기 획: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기획팀 055-751-4950
- 선 정: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기술평가팀 042-220-5361
- 관 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사업총괄팀 055-751-4831

2 수출연계부품 국산화

→ 개요

무기체계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 중이거나 수출 계획이 있는 무기체계의 해외 도입 부품(E/L 등) 대상의 부품 국산화 과제에 대하여 개발업체를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

→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대상품목 : 체계개발, 양산단계 및 운용유지단계 중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

• 과제선정기준

- 수출대상 무기체계, E/L여부, 경제성(수출가능성, 수출규모) 등

• 지원 내용

- 개발기간 : 최대 5년
- 지원금액 : 최대 100억원 한도 내 기업유형별 차등* 지원
* (대기업) 총개발비의 50% 이내, (중견기업) 총개발비의 70% 이내, (중소기업) 총개발비의 75% 이내

• 지원규모

- 257.95억원 ('24년 예산 기준)

• 혜택

- 연구개발서확인서 발급 시 수의계약(최장 5년)
- 과제 참여 체계업체에 상생협력확인서 발급

→ 신청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 제출서류

- 과제수행계획서,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등

→ 추진 일정

-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과제선정 : 3월
- 주관기업 공모 및 선정 : 4 ~ 6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7월
- 사업착수 : 7월 ~

문의처

- 정책·제도: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02-2079-6443
- 기 획: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기획팀 055-751-4950
- 선 정: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기술평가팀 042-220-5361
- 관 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사업총괄팀 055-751-4831

3 전략부품 국산화

→ 개요

방위산업을 선도할 수 있으며 다체계 적용이 가능하고 개발 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부품의 국산화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

→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대상품목 : 다체계 적용이 가능하고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외도입 부품

• 과제선정기준

- 중장기발전 무기체계 적용 가능성, 해외시장 선점 가능성 등 고려
* 기존 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선정대상 기준 포함

• 지원 내용

- 개발기간 : 최대 5년
- 지원금액 : 과제비 기준 최대 500억원 한도 내 기업유형별 차등* 지원
* (대기업) 총개발비의 50% 이내, (중견기업) 총개발비의 70% 이내(중소기업) 총개발비의 75% 이내

• 지원 규모

- 411.62억원 ('24년 예산 기준)

→ 신청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 제출서류

- 과제수행계획서,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등

→ 추진 일정

-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과제선정 : 3월
- 주관기업 공모 및 선정 : 4 ~ 6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7월
- 사업착수 : 7월 ~

문의처

- 정책·제도: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02-2079-6475
- 기 획: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기획팀 055-751-4950
- 선 정: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기술평가팀 042-220-5361
- 관 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사업총괄팀 055-751-4831

4 일반부품 국산화 시험평가

→ 개요

연구개발 및 양산 단계 무기체계 수입부품의 국산화를 승인받은 업체가 자체 개발하고, 개발성공 시 시험평가비 일부를 지원

→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연구개발 및 양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수입부품
 - *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및 양산계획서 등의 사업계획에 포함된 국산화 개발 대상품목 제외
 - ** 업체 자체적으로 개발대상 품목을 선정하여 수시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개발성공* 과제에 대해 시험평가비 일부 지원(3억원 한도)
 - * 개발성공 기준 : 국방규격 제·개정
- **지원 규모** : 25억원('24년 예산 기준)
- **혜택** :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품목의 수익계약권 및 수입가격 인정(5년)

→ 신청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 **제출서류** : 개발관리기관이 협약을 통해 인정한 증빙 서류 등
 - * 세부절차 및 내용은 비용지급 및 개발관리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문의

→ 추진 일정 : 수시 접수

문의처

- 정책·제도: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02-2079-6472
- 개발 승인·평가·관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사업총괄팀 055-751-4826

5

방산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1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 개요

첨단무기개발에 강점을 가진 대학에 방산기업이 필요로 하는 첨단학과 및 석·박사 과정을 설치해 방산기업 채용예정자(또는 재직자) 교육을 지원

→ 주요 내용

- **설치학과** : 국방 신산업 등 첨단 분야 학과
 - * 국방우주(세종대, 연세대, 한밭대), 국방 무인로봇·인공지능(광운대, 서울과기대)
- **지원대상/규모**
 - (주관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 (학생) 방산기업 채용예정자(또는 재직자)
 - (참여기업) 학과 개설 분야 실적이 있는 방산 관련 업체
 - (지원규모) 7.71억원('24년 예산 기준)
- **지원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지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기업간 채용 및 근무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후, 학생에게 매학기 기준등록금을 차등 지원*하고 선정된 대학에 학과 운영비** 지급 * 등록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교육형 : 국비 50~70%, 민간 30~50% / 채용조건형 : 전액 ** 학기당 35백만원 내외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은 기업과의 채용·근무 약정에 따라 참여기업에서 의무 근무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지원하되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 '24년 기준 등록금 : (국공립) 320만원, (사립) 580만원

➔ 신청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 3자 계약 : 기업-학생-학교 간 체결

➔ 추진 일정

- 신입생 선발 : 1월 ~ 2월
- 봄 학기 개시 및 학과 운영 : 3월
- 가을 학기 개시 및 학과 운영 : 9월

문의처

- 정책·제도: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02-2079-6446
- 기획·선정·평가·관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 055-751-4864

2 방위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 개요

청년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방위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방산 전문교육(6개월) 및 방산업체 등의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

→ 주요 내용

• 지원대상/규모

- (주관기관) 협회, 학회,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 금오공대 및 창원대 산학협력단에 교육과정 개설·운영중
- (참여기업) 방산업체 또는 방산관련 실적이 있는 업체
- (교육생) 청년층(19~34세 이하) 대졸 미취업자
- (지원규모) 5.36억원(*24년 예산 기준)

• 지원내용

구분	주요 내용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수당 : 교육생 1인당 총 360만원 지원(6개월) * 전문교육(4개월, 월 40만원/인)+기업연수(2개월, 월100만원/인) • 교육지원금 : 교육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 기관별 최대 1.7억원 지원 * 주관기관은 현물 및 현금을 총 사업비의 25% 이상 출자 	
교육 분야	전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산업 전문분야 이론 및 실습교육 •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본 직무 소양 및 기초이론 포함
	실무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 기업에서 실제 업무 체험 및 연수하는 교육 진행 * 기업연수는 교육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연수인원은 주관기관이 분할 및 조정하여 시행

→ 신청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 추진 일정

- 교육생 모집 및 선발 : 3월
- 교육과정(전문교육) 개시 : 3월

문의처

- 정책·제도: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02-2079-6446
- 기획·선정·평가·관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 055-751-4864

③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

→ 개요

방산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해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기술·기능인력 양성 및 방위산업계 인력유입 촉진

→ 주요 내용

• 지원대상/규모

- (주관학교)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포함)
 - * 동아마이스터고, 부산기계공고, 한국과학기술고에 교육과정 개설·운영중
- (참여학생) 참여학교로 선정된 특성화고의 3학년 재학생
- (참여기업) 방산업체 또는 방산 관련 실적이 있는 업체

• 지원예산 : 225백만원('24년 예산 기준)

• 지원내용

-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소요 비용

구분	지원 내용	비고
참여학교	•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운영에 필요한 소요 비용 및 참여기업 발굴·매칭 지원	학교당 75백만원 내외
참여기업	• 해당 기업의 필요 직무를 반영하여 양성한 “방위산업 전문기능인력” 채용	학생 선발·교육에 참여
참여학생	• 졸업 후 방산기업 등 채용 협약	최소 2년 근무

* 특성화고 학생을 고용하고자 하는 방산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특성화고 학생 및 특성화고가 취업확정 협약을 맺고 기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후 취업까지 연계하도록 설계

→ 추진절차

• 선정절차



* 3자 협약 : 참여학교-기업-학생 간 협약

• 교육운영 절차



→ 추진 일정

- 참여학교(계속) 선정 평가 및 협약 체결 : ~ 3월
- 교육과정 개설 : 6월

문의처

- 정책·제도: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02-2079-6446
- 기획·선정·평가·관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 055-751-4864

6

방위산업 중소기업 대상 SW 분석도구 무상지원 사업

→ 개요

기업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무기체계 SW 품질향상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SW 분석도구 2종을 무상지원하는 사업

→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중소·벤처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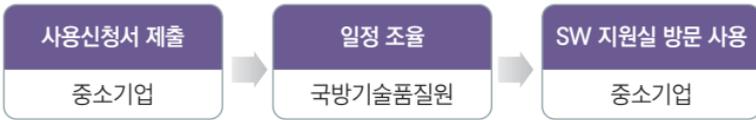
• 지원내용

- 정적시험 도구 1종,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석도구 1종

SW 분석도구	점검 항목	내용
정적시험 도구 1종	코딩 규칙	방위사업청 코딩규칙, MISRA-C/MISRA-C++ 등
	취약점	CWE-658(C언어) / CWE- 659(C++) / CWE-660(Java) 등
	소스코드메트릭	소스코드 복잡도 및 제한값 확인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석도구 1종	공개 SW 사용여부	공개 SW 사용방법 준수 확인

- **지원 규모** : 기업 부담 비용 없음
- **지원 장소**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뢰성연구센터 경비동 내 'SW 지원실'
 -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단지로 70 (상서동) 국방신뢰성연구센터
- **지원 방법**
 - 고객이 개발환경, 소스 코드가 탑재된 노트북을 지참하고, 노트북과 SW 분석도구 설치 PC를 연결하여 SW 점검 수행
- **지원 범위** : SW 분석도구 초기 환경설정, 도구 사용법 설명 등

→ 신청 절차



- **제출서류**
 - 사용신청서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 사용신청서 양식 및 세부사항은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추진 일정

- 연중 수시 접수

문의처

- 국방기술품질원 SW/IT연구실 담당원 042-251 - 5555
- 국방기술품질원 SW/IT연구실 담당원 042-251 - 5557

04

C·H·A·P·T·E·R

국방 첨단전력산업 육성 사업

- ① 방산혁신기업 100 지정 및 전용지원사업
- ②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사업
- ③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1 방산혁신기업 100 지정 및 전용지원사업

→ 개요

국방 첨단전략산업분야(우주, AI, 유·무인복합, 로봇, 반도체 등)의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여 「방산혁신기업 100」으로 지정하여 육성

* '22~'26년(5년)간 매년 20여개 기업씩, 5년간 총 100개 기업을 선정·육성

** 총 35개 혁신기업 선정 완료('22년 1기 18개사, '23년 2기 17개사)

→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국방분야 적용가능성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연구개발역량을 갖춘 기업

• 지원 내용

- 컨설팅, 인력·자금, 기술개발 등 중소·벤처기업지원 쏠분야 지원



- 기존 청의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우대 및 전용지원사업*(기술개발과제 및 맞춤형 지원) 추진을 통한 Full-Package 혜택

* 전용지원사업은 방산혁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대상

• 지원 규모 : 390억원 ('24년 예산 기준)

→ 신청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 추진 일정

방산혁신기업(3기)	전용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년 추진계획 수립 : 1월 모집공고 : 2월 기업 선정평가 : 3월~5월 기업선정 및 협약 :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3차 과제 선정 : 5월 '24-1차 과제 공고 : 7월 '24-1차 과제 선정 : 11월

* 기술개발 외 맞춤형 지원사업은 연중 수시 지원

문의처

- 정책·제도: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02-2079-6445
- 기획·선정·평가·관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위산업전략팀 042-259-9830

2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사업

→ 개요

기술력이 우수한 초기 창업단계 민간 중소벤처기업을 국방 분야에 진입시키기 위하여 교육, 컨설팅, 실전사업화 등을 종합지원하는 사업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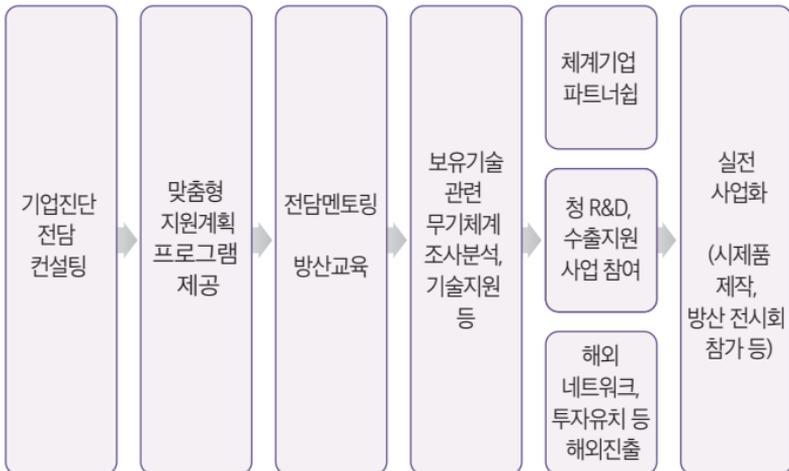
• 지원 대상

- 국방경험이 없는 창업 7년 이내 중소·벤처기업

* 신산업분야(우주, AI, 드론, 반도체,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 지원 내용

- 방산교육, 맞춤형 컨설팅, 실전사업화 등 종합지원



- **지원 규모** : 기업당 최대 1억원 정부지원 (총 소요비용의 75% 한도 내)

→ 신청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 제출서류

- 신청서, 과제수행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등

→ 추진 일정

- 지원대상기업 모집 및 선정 : 2월 ~ 5월
- 사업착수 : 6월 ~

문의처

- 제도 및 예산 문의: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02-2079-6444
- 사업 문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사업총괄팀 055-751-4828

3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 개요

방산 소재·부품의 선제적 개발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통해 지역기반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

→ 주요 내용

• 추진방향

- 지역 중점 전략산업과 연계한 국방 첨단전략사산업 중심의 특화 클러스터 확대 구축 및 클러스터간 상생 협력체계 구축

• 운영현황

구분	경남·창원사업단	대전사업단	경북·구미 사업단
특화 분야	시범사업으로 추진	드론 분야 특화	유무인복합체계 특화
사업기간(5년)	2020년 ~ 2024년	2022년 ~ 2026년	2023년 ~ 2027년
예산 (5년 간)	총 490억원 (국비 250억원, 지방비 240억원)	총 490억원 (국비 245억원, 지방비 245억원)	총 499억원 (국비 245억원, 지방비 254억원)

• 주요사업

- 각 사업단별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방산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문의처

- 제도 및 예산 문의: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02-2079-6471
- 사업 문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 055-751-4862~3

05

C·H·A·P·T·E·R

방위산업 수출 지원사업

- ①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 ② 방산전시회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 ③ 유망 수출품목 발굴 지원사업
- ④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1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 개요

방산수출 진흥을 위해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무기체계의 수출용 개조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방산분야 중소/중견/대기업

• 지원 품목

- 국내 조달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포함)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포함)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포함)

• 지원 내용

- 최대 5년 간, 총사업비 최대 500억원 미만의 과제를 기업 유형별 차등 지원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정부지원	75%	60%	50%
기업부담	25%	40%	50%

- 지원 규모 : 751.92억원 ('24년 예산 기준)

➔ 신청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 추진 일정

- 사업공고(공모 및 신청 접수) : 2월(1차), 6월(2차), 9월(3차)

문의처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담당관 02-2079-6378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출개발사업팀 055-751-4891, 055-751-4895

2

방산전시회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 개요

방산수출 진흥을 위해 국내·외 방산전시회 및 시장개척활동, 온라인 전시 참가 업체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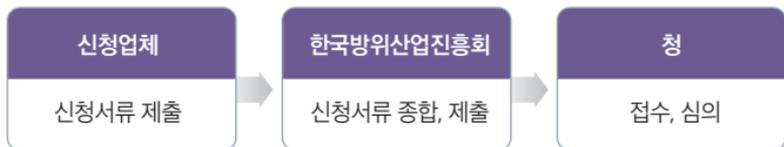
→ 주요 내용

- **지원 대상/품목**
 - 방산 분야 중소·중견기업 / 방산물자 등, 군용물자
- **지원 내용**

구분	참가형태	지원항목	지원율	지원한도
해외 전시회	중소 기업관	중소기업관 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통역비, 홍보물 제작비, 공동 교통비	100%	3억
	개별참가	임차료 및 장치비, 운송비, 홍보물 제작비	80%	1천만원
국내 전시회	중소/중견기업	임차료 및 장치비, 운송비, 홍보물 제작비	80%	5백만원
시장개척활동		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통역비, 오/만찬비, 홍보물 제작비, 공동교통비 등	100%	4천만원
온라인 전시		온라인 콘텐츠 제작비	70%	7백만원

- **지원 규모** : 16.35억원 ('24년 예산 기준)

→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신청서류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제출
 - ※ 세부사항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 공고문 통해 확인

→ 추진 일정

• 사업공고

- 매 분기별 공모 및 신청 접수(잠정 1, 4, 7, 10월 각 1회)

문의처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담당관 02-2079-6376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전시사업팀 02-3270-6054

3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 개요

해외방산시장 진입촉진 및 시장진출확대를 위한 수출마케팅, 해외인증획득 등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갖춘 방산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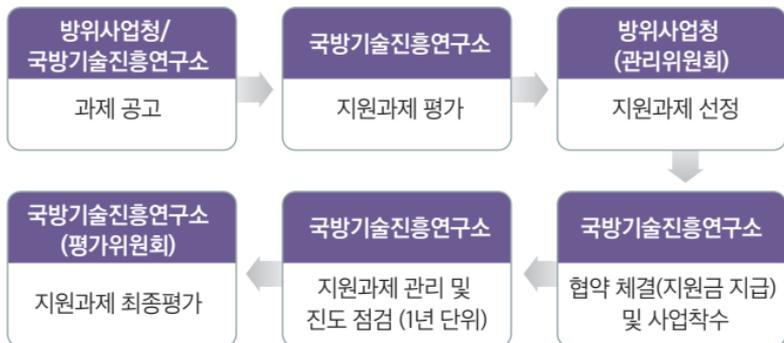
→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방산분야 중소기업
- **지원 내용**

구분	지원 사항	지원 한도
수출 컨설팅	해외 목표시장 정보 조사 및 법률·회계 등 해외 영업 및 수출 관련 컨설팅	
해외인증 획득	글로벌 방산업체의 부품 공급망 진입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인증(시스템 및 제품 인증) 획득 비용	소요비용 70% / 최대 3천만원
해외 성능시현	수출대상국가 또는 글로벌 방산업체 요청에 따른 해외 성능시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해외 바이어 발굴	외국 정부 및 글로벌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무역 촉진단 파견 등을 통한 수출 마케팅 활동	국기연 주관 행사에 기업 참여

- **지원 규모** : 9.3억원 ('24년 예산 기준)

➔ 신청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 추진 일정

- 사업공고(공모 및 신청 접수)

: 3월(1차), 6월(2차)

문
헌
처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담당관 02-2079-6378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출지원팀 055-751-4918, 4896

4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 개요

방산분야 중소기업이 급격히 증가한 방산수출 물량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형 및 설비 고도화 등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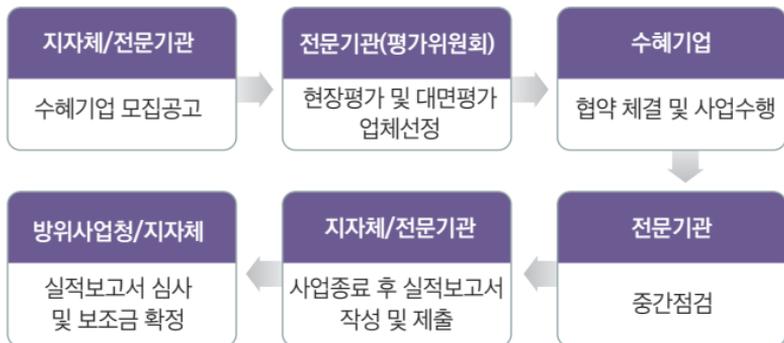
→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지자체 내 방산 분야 중소기업
 ※ '24년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 **지원 내용**

구분	사업 내용	분담 비율	지원한도
금형 고도화 및 신규제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생산 공정을 줄일 수 있는 금형 • 치수·표면 불량, 크랙 등 제품의 불량률을 개선하는 금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 제작(코어 등) 지원 포함 • 기존의 소량 생산방식에서 대량생산을 위한 신규 금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형의 설계비는 기업이 부담 	자부담 25%, 정부 75% (국비: 지방비 =7:3)	기업당 60백만원
생산설비 고도화 및 생산최적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 개량 지원 • 생산물량 향상에 따른 추가 생산설비 증설 지원 •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사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장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포함 • 노후화된 기존 생산설비(검사 및 시험 장비 포함)의 교체, 오버홀 비용 지원 	자부담 50%, 정부 50% (국비: 지방비 =7:3)	기업당 225백만원

- **지원 규모**
 - 23.2억원 ('24년 예산 기준, 지방비 및 업체자부담 포함시 61.9억원)

→ 신청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 **신청방법** : 신청서류 각 지자체의 전문기관에 제출
※ 세부사항은 지자체 및 지자체별 전문기관 홈페이지 공고문 통해 확인

→ 추진 일정

- 수혜기업 모집공고 : '24년 3월
- 전문기관 주관 업체선정(평가위원회) : '24년 4월
-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 '24년 5월

문의처

- 제도 및 예산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02-2079-6471
- 사업 문의 : 각 지자체 및 전문기관 공고문의 연락처 참고



2024년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 및 사업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사업 "중기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①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 ② 성과공유제
- ③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 ④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사업
- ⑤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 ⑥ 기술자료 임치제도
- ⑦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
- ⑧ 상생누리 플랫폼
- ⑨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1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 개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

* 근거법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0조의5

상생협력기금 출연 인센티브

- ① 출연금의 10% 법인세에서 공제(조특법 제8조의3)
- ② 출연금 100%까지 기부금 인정(법인세법 제24조)
-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의 유휴자금에 대하여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부과 시,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액의 3배수 공제(조특법 제100조의32)
- ④ 「동반성장지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등 실적 반영

→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상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용도**
 - 출연기업이 용도와 사업을 지정하여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창업지원 등에 활용
 - * 상생협력법 제20조의5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4
- **운영 현황**
 - 출연금액 25,438억원(403개사), 지원금액 22,283억원

(단위:억원,개사 / '23.10.31. 기준)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10	
출연 금액	수입	1,134	285	841	1,299	1,424	1,500	1,572	2,013	2,007	2,572	3,683	4,363	2,735
	누적	1,134	1,419	2,260	3,559	4,983	6,483	8,054	10,067	12,074	14,646	18,330	22,693	25,438
지원 금액	수입	134	333	788	1,291	1,448	1,443	1,515	1,839	1,704	2,295	2,574	3,426	3,495
	누적	134	466	254	2,545	3,993	5,436	6,951	8,790	10,494	12,788	15,362	18,788	22,283
출연 기업	18	26	93	121	123	119	116	113	162	184	237	262	241	

➔ 추진절차

- **출연절차**: ①출연신청 및 지원사업* 선택(상생협력기금 종합관리시스템) → ②상생협력기금 출연(가상 계좌로 입금) → ③출연확인(협력재단 확인) → ④기부금영수증 출력(상생협력기금 종합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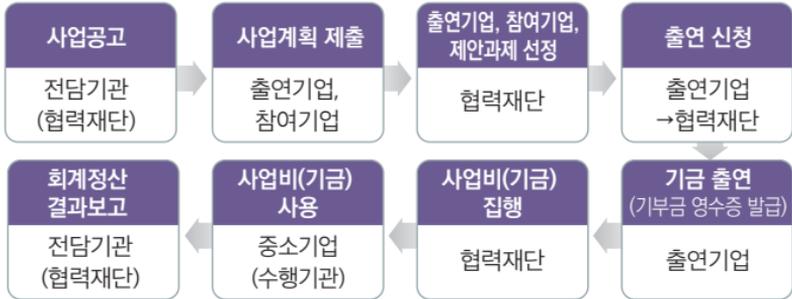
* 불임(상생협력기금 사업) 참조

- **운영절차**: 사업별 정부 자원 매칭 여부에 따라 절차 상이

〈 정부 비매칭 지원사업(민간자율 기획사업 등) 〉



〈 정부 매칭 지원사업(출연기업 부담 30% 이상) 〉



문의처

• 상생기금부 02-368-8771/483/489/979/993

붙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활용 사업개요

- 1) **민간자율 기획사업** : 내국법인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을 상생법 제20조의5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의한 사용용도에 따라 중소기업을 수혜자로 하여 협력재단을 통해 지원 (정부매칭금 “무”)
 - * 사용용도 : 상생법 제20조의5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4 해당하는 모든 활동
- 2) **성과공유제** : 협력사와 함께 신제품 개발, 판로 개척,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공동협력 활동을 추진, 그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계약대로 공유(정부매칭금 “무”)
 - * 사용용도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 3) **공동투자R&D** : 정부와 투자기업(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이 투자협약 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정부매칭금 “유”)
 - * 사용용도 :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사업
- 4) **산업혁신운동** : 대·공·중견기업의 출연금으로 2·3차 협력사 및 미연계기업의 생산성혁신 활동을 지원 (정부매칭금 “무”)
 - * 사용용도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 5)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별 중소기업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정부매칭금 “유”)
 - * 사용용도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 6) **대·중소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 대·공·중견기업이 정부와 자금을 조성,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협력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종합 지원 (정부매칭금 “유”)
 - * 사용용도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 7)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기업의 해외 인프라 등을 활용한 공동마케팅 및 해외진출 촉진 (정부매칭금 “유”)
 - * 사용용도 : 대·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공동 협력 사업

8)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 창업·벤처기업 대상 사업화자금, 해외시장진출 및 액셀러레이팅 등 지원계획을 협력재단에 제안하여 지원
(정부매칭금 “무”)

* 사용용도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지원 사업

9) 지역사회 동반성장 : 대기업과 지역사회의 중소·소상공인 또는 중기단체 등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특성 및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 맞춤형 상생 기금 활용 과제발굴·지원(정부매칭금 “무”)

10) 동반성장 문화 확산 : 민간부분이 합의한 동반성장 추진 지원(동반위 수행)

* 사용용도 :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 구축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2 성과공유제

→ 개요

수·위탁기업 간 사전에 약속된 공동 혁신활동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으로 공유하는 계약모델

* 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 주요 내용

- **사업내용**: 성과공유과제 계약을 통해 수·위탁기업간 공동 혁신활동을 추진하고 과제수행으로 발생한 성과를 공평하게 배분
- **참여대상**: 위·수탁기업*
* 수탁기업의 경우 「상생협력법」 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외에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
- **핵심요건**: ①협력활동 목표합의, ②사전계약 체결, ③성과공유
- **공유유형**: 현금성 유형 2개(①현금배분, ②물량·매출확대)

→ 신청 절차

- 성과공유제는 과제 “등록→확인” 2단계 절차로 운영 중

① 성과공유과제 등록절차

- (제출서류) 성과공유제 등록신청 시 표준계약서와 수행계획서 필수 제출



* (등록과제) 신청과제 중 성과공유 핵심요건을 충족하는 과제임을 승인받은 과제

② 성과공유과제 확인절차

- (제출서류) 목표달성, 공동노력, 성과공유에 대한 증빙자료



* (확인과제) 등록과제 중 목표달성, 공동노력 및 성과공유 실적을 확인받은 과제

** 공공기관의 경우 수익계약용 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별도 문의)

➔ 추진 일정

-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benis.or.kr)을 통한 연중 상시 접수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성과확산부)

이메일 : benis@win-win.or.kr

02-368-8793-8944

3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 개요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인프라·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역량은 있으나,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지원

* 네트워크 : 해외 무형적 자원(인력,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역량 등)

** 인프라 : 해외 유형적 자원(해외법인·사무소, 온·오프라인 유통매장 등)

→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주관기업*과 참여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해외 동반진출 컨소시엄 과제

* 주관기업 :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 산업의 선도기업

• 지원 유형

구분		내용
산업재	인프라 연계	해외 인프라 및 플랫폼 활용 대기업 보유 유·무형 인프라 및 플랫폼, 노하우 활용한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해외법인 설립 지원 (대기업의 진출지역 혹은 현지 거점) 중소기업의 법인(공장) 설립 지원
		공동수주 및 기술 수출 대기업과 국제개발협력 및 사회간접자본 분야 등 공동수주·기술수출 지원
		공동전시회·수출상담회 대기업과 국제 전시회·상담회 공동참가 통한 판로개척 지원
프로젝트성 인프라 연계	동반 신시장·신사업 진출 대·중소기업간 동반 신시장·신사업 진출을 위한 해외 대형 글로벌 프로젝트 지원 * 제품 현지화지원, 현지 실증 POC 지원 등	

구 분		내 용	
소 비 재	K-콘텐츠 연계	행사	(B2C) 대규모 한류 콘서트 연계 부대행사(판촉전) 개최 및 앰버서더&공연 IP 연계 홍보 및 판매 지원
			(B2B) 현지 바이어 초청 1대 1 수출상담 지원
	콘텐츠	중소기업 제품 PPL용 브랜드드 콘텐츠 제작, 주요 플랫폼별 편집본 송출 및 판매 연계	
	유통망연계	주관기업 보유 유통망(TV채널, 온라인·모바일 커머스플랫폼, 바이어 풀) 연계 수출 지원	

• 지원 규모

- 168.51억원('24년 예산 기준), 연간 50개 내외 과제 운영
 - * 중소기업 1개사 기준 최대 3천만원(단, 프로젝트 과제의 경우, 1억원 한도)
- (과제비 구성) 총 과제비 = 정부지원금(60%) + 민간부담금(40%)
 - *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활용 시 정부지원금 최대 70%까지 지원

• 지원 내용

- 대기업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현지화 활동 지원

동반진출 지원사업 방산기업 사례

과제 개요

- LIG넥스원의 브랜드파워, 우호 네트워크, 전시회 전문인력 및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대표 방산국제전시회에 협력중소기업과 공동참가하여 신규시장 발굴 및 사후성과 관리 지원

세부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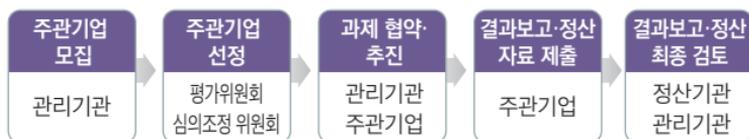
- (전시지원) ADEX2023 전시회 임차 및 설치 지원
- (사전·사후지원) 사전 교육 및 사후 리셉션 지원 통한 기업 참여 효과 제고

주요 성과

- 참여중소기업 9개사 기준 대비 전문 관람객(해외 방산바이어, 군관계자 등) 5배 증가, 상담액 116.3억원, 상담건수 27건, 수출예정액 15억원 등

→ 추진 절차

- 평가 및 심의를 통해 과제(주관기업) 선정 후, 과제별 참여중소기업 모집 및 해외동반진출 활동 지원
- 세부 추진 절차



→ 추진 일정

- 과제로 모집공고 : 2월 예정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 이메일 : gw@win-win.or.kr
- 02-368-8473, 8764, 8758

4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사업

→ 개요

기술보호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을 선도기업으로 발굴·지원하여 기술보호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중소기업 전반으로 기술보호 문화 보급·확산**

- * (기술보호 수준진단)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보호 인프라에 대하여 세부지표 (5개 대분류, 20개 소분류, 73개 세부지표)에 따라 기술보호 역량과 수준을 정량평가
- ** (국정과제 목표/누적) ('22) 30개사 → ('23) 70개사 → ('24) 120개사

→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 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규제종인 기업, 국제 또는 지방세 체납기업, 정부지원 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은 대상 제외
 - 선정기준 : 보유 기술의 기술보호 필요성 및 시급성, 혁신성 및 차별성, 기술보호 수준 및 노력, 향후 계획 및 목표의 타당성 등
 - 우대사항 : 기술성이 검증된 TIPS 및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선정, CES 수상 이력 보유,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소기업 등 우대
- **지원 내용**
 - (예비)선도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수요 대응 및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 원하는 지원분야에 바우처 도입(타사업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선도기업 직접 지원)
 - 단계별 지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3단계(초보·유망·선도)로 구분하여 바우처 한도(최대 70백만원) 및 보조율 차등(최대 +30%) 적용

〈 기술보호 바우처 단계별 지원(안) 〉

기술보호 수준	초보기업(1단계)	유망기업(2단계)	선도기업(3단계)
기술보호 수준	45점 미만	45~75점 미만	75점 이상
바우처 한도	30백만원	50백만원	70백만원
정부보조율	+30%(최대 80~90%)	+10%(최대 60~80%)	기본(최대 50~70%)

* 정부보조율은 기술보호 시스템 구축·운영(기본 50%+α), 정책보험(70%+α) 분야에 적용하고, 나머지 지원분야는 100% 지원

- 지원대상·우대 : 기술보호 선도기업으로 지정 또는 육성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창업 7년 이내)은 한도 10백만원 및 보조율 10% 추가

- **지원 분야** : 기술보호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까지 기술보호 역량 강화와 대응을 위하여 바우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사용

〈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프로그램(안) 〉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한도	
기술 보호 예방	기술보호 컨설팅·교육	· (보안·법률컨설팅) 보안 및 법률 분석과 솔루션 등 제공 · (교육)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파견, 임직원 대상(5명 이상) 교육 지원	1,000만원
	보호시스템 구축·운영	· 기술보호시스템 구축·고도화, 라이선스 구입·갱신, 클라우드 사용, 악성코드·랜섬웨어 SW 구입·사용 비용 (보조율 50%, 최대 90%)	4,000만원
	기술자료의 안전한 보관	· 기술자료 임치 또는 거래 과정의 증거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신규·갱신 비용 지원	200만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실용신안 관련 사건의 법률비용 보장 보험 가입료 지원(보조율 70%, 최대 90%)	1,000만원
기술침해 사후 대응	· 조정·중재에 소요되는 비용,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디지털 포렌식,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한 대응 비용 지원	1,000만원	

- **지원 규모** : 2,500백만원('24년 예산 기준)

→ 신청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 추진 일정

- 중소기업 모집 공고 및 사업 홍보 : ~3월
- 지원대상 선정 및 바우처 참여 협약체결 : ~5월 및 사업관리 5월~
-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 : 6월, 11월
- 선도기업 성과보고회 : ~11월

5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 개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의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기술보호 자문(컨설팅) 지원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중소 및 특례대상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의거
- **중견기업** : 특례대상 중견기업만 가능(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7조의2에 의거 하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①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 유흥, 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 지원규모 : 기업당 연 3회(보안, 법률, 인적보호), 최대 10일간 지원

* 기초자문 : 기술보호 수준진단 및 임직원 교육, 기업 맞춤형 자문(무료, 최대 3일)

** 심화자문 : 보안분야에 한해 추가적인 문제해결 및 보안역량 강화 필요시 지원 (소요비용의 75% 지원, 최대 7일, 선도기업 협약대상 우선지원)

• 지원내용 : 기술보호 역량진단, 보안교육, 분야별 자문 제공 등

구분	내용
현장진단(1일차)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업의 보안수준 진단 및 해결방안 제시 · 기업 현장 방문하여 보안수준 점검 및 자문방향 협의
보안교육(2일차)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기술보호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 기타 기업 질의응답 등
기초자문(3일차)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 후, 보안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 도출 소요기간이 부족할 경우, 전문가 추가 상담·자문 제공 · 현장방문하여 현장진단 문제점에 대한 추가 대책 제공

• **자문분야** : 보안·법률·인적보호 분야 전반

연번	구분	자문내용	분야
1	보안전략	보안규정 수립 및 인적·자산 등 관리적 보안역량 강화	보안
2	보안시스템	PC환경 점검, 보안솔루션 적용방안 등 기술적 보안역량 강화	
3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수준진단 및 시스템 도입·관리방안 자문	
4	법률자문	기술거래·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대응 관련 법률자문	법률·IP
5	해외진출기술보호	해외 기술거래시 기술보호 및 기술유출 사전예방 지원	
6	인적보호 (혁신형 중기 한정)	비밀유지서약서 및 경업금지약정서 계약서 작성 컨설팅 및 내부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사전예방 방안 수립 등	인적보호

➔ **신청 절차**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시 신청**

• **관련 홈페이지**

- (경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 전문가 현장자문 → 사업신청
- (주소) <https://www.ultari.go.kr/portal/psi/techDefend.do>

➔ **추진 일정**

• **사업 개편으로 인하여 상기 내용으로 한정 지원 (~'24.6월)**

- 중소기업정책실 기술보호과 **044-204-7781**
이메일: kim2006@korea.kr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18**
consulting@win-win.or.kr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6

기술자료 임치제도

→ 개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

* 관련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 주요 내용

• 이용대상

- 기술자료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등

• 임치대상

- 제조·생산방법과 판매방법,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등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기술자료)

기술상 정보	경영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제조방법 • 시설·제품설계도 및 매뉴얼 • 물질 배합 비율·성분표 •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이용효과

- 기술유출 등 문제발생 시 개발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 및 사용인의 기술탈취·유용 방지

개발기업	사용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사실 및 보유 시점 입증 • 기술탈취 방지, 자료 유실 대응 • 기술자료 요구 사전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기업의 기술에 대한 신뢰성 확보 • 개발기업의 폐업, 파산 시(특약조건 해당인 경우), 기술의 지속적인 사용 보장

• 이용수수료 및 감면조건

계약종류	수수료	감면조건
신규계약	300,000원/ 최초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감면)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창업·벤처기업, 경영·기술혁신형기업 • (1/2감면) 5년 이상 신규·갱신계약 체결시 • (전액) 아이디어임치, 다건임치
갱신계약	150,000원/년	
사용인 편입계약	50,000원/년	-
임치물 추가계약	50,000원/년	-

→ 신청 절차

• 온라인



• 오프라인



- 문의 : 02-368-8484
- 전자우편 : escrow@win-win.or.kr /
- 홈페이지) : www.kescrow.or.kr

7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

→ 개요

(목적)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

(사업) 기술탈취 등 피해기업으로부터 분쟁조정을 신청받아 신속히 해결하고, 검찰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공조 모색

분쟁 해결	조정		중재	
	조정부의 도움으로 당사자간 합의사항을 조율하여 분쟁해결('15년~)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부 판정으로 분쟁해결('15년~)	
비용 지원	조정·중재 대리인 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조정·중재 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최대 1,000만원)('16년~)	조정 불성립 후 연계된 소송 비용 지원 (최대 2,000만원)('16년~)		기술분쟁 활용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최대 5,000만원)('22년~)
범부처 연계	법원 연계	검찰 연계	행정조사 연계	동반위 지수가점
	민사사건 연계 ('15.1월~)	형사사건 연계 ('19.11월~)	중기부 행정조사 연계('18.12월~)	대기업 조정 합의시 지수가점 부여('19년~)

→ 주요 내용

- **신청자격**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2조1항), 중견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9조3항)
- **신청방법** : 상시 상담(전화) 후 온라인 접수(solomon@win-win.or.kr)
- **제출서류** :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 관련서식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분쟁범위** : 중소기업 기술(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 경영정보 등)
-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비용지원 제도〉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금액
조정·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중재를 신청한 기업의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 조정성립 시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최대 500만원 지원 * 법원연계 조정성립 시 양 당사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최대 500만원 지원 	최대 1,000만원
소송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 불성립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 지원심사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 	최대 2,000만원
기술가치평가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부가 기술가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분쟁 활용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최대 5,000만원

→ 지원 절차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조정·중재 절차〉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지원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담당자) 김소명 과장: 02-368-8768, ksm@win-win.or.kr
- 김슬빛나 대리: 02-368-8769, sbnk@win-win.or.kr
- 김성현 대리: 02-368-8913, shkim@win-win.or.kr

8

상생누리 플랫폼

→ 개요

(추진근거) 「제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14.11.17, 관계부처 합동)」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18.5.24, 관계부처 합동)」 중점과제*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산업부고시 제2014-234호)」(‘14.11.17)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정부 관계부처합동)」(‘18.5.24)

→ 주요 내용

• 지원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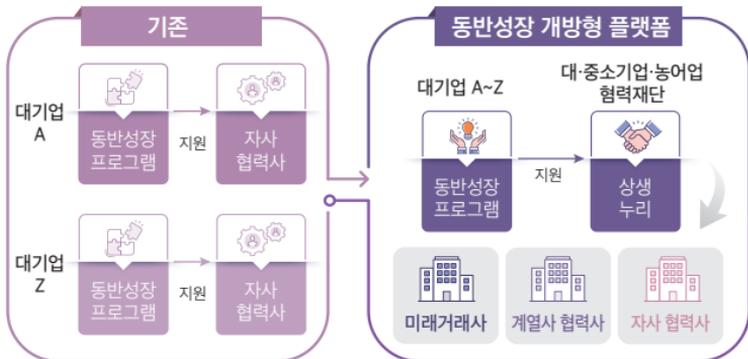
- 상생협력 종합 플랫폼 정착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및 상생협력 문화 조성

• 지원 내용

- 정부, 대기업·공공기관, 학교, 협·단체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상생누리 플랫폼 한 곳에 모아 잠재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참여기회 제공

* 상생누리 플랫폼 활용(www.winwinnuri.or.kr)

〈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구축·운영 흐름도 〉



→ **신청 절차** (※ 세부사항은 상생누리 플랫폼을 통해 확인)



9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 개 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민간의 자발적인 보급확산 생태계 구축

→ 주요 내용

- **지원방식** : 주관기관(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이 중소·중견기업 및 협업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
* 주관기관이 지원할 중소기업(도입기업)을 직접 모집·선정
- **지원규모** : 240억원
-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의 구축비용 일부 및 운영비 지원
- (구축비용 지원) 주관기관이 선정한 중소·중견기업의 구축비용을 지원

지원유형	지원조건	총사업비 (최대)	분담비율		
			정부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고도화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4.0억원	최대 30%	30% 이상	40% 이내
고도화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1.0억원			

- (운영비 지원) 주관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협업기관·재원관리기관에서 중소·중견기업 모집·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 이내 협업기관·재원관리기관 운영비로 책정 가능

- **사업기간** : 최대 12개월(협약기간 협의 가능)

• 추진절차



* ⑤주관기관 별 중소·중견기업(도입기업) 모집은 별도 공고

➔ 사업비 구성

- **주관기관은** 정부지원금 및 주관기관 출연금 매칭 외에 현물출자 인정(최대 20%)에 대한 추가 정부지원금을 반영한 사업비 구성 가능

구분	직접사업비 구성(예시)		
	주관기관 출연금	정부지원금	합계
비율	30%	30%	60%
현금	100억원	120억원	220억원
(현물-인건비)	(20억원)	-	(20억원)
총계	120억원*	120억원	240억원

* 기존 참여 주관기관은 최근 3년 평균 현금 출자액 이상 출자할 경우 최대 20% 인정

** 주관기관은 사업완료 후 전담기관에 현물출자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현물출자 약속서 등 인건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사업 참여 효과

- **세제혜택** : ①출연금의 10% 법인세 공제, ②지정기부금 투자기업 손금인정, ③상생협력 촉진세제 절세 효과 등 세제혜택 부여
- **동반성장 평가우대** : 동반성장지수평가의 ①상생협력기금, ②생산성향상 지원 실적(3점) 반영 및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의 ①상생협력기금, ②기술혁신 및 기술보호 지원 실적(1.5점) 반영
- **재단 상생사업 연계**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실적 등을 성과공유제 및 기술임치 등 재단 상생사업 과제로 연계하여 실적 확보 가능

연간 사업 일정표

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핵심부품/수출연계형/ 전략/일반부품국산화)		* 일반부품 국산화 (수시)		과제선정 (핵심/ 수출연계/ 전략부품)	주관기업 공모 (핵심/ 수출연계/ 전략부품)	
방산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대상기업 모집/선정 (1차)
국방벤처 지원사업			사업공고 (국방벤처)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사업공고			
방산혁신기업 100 지정			모집공고 (3기)			
국방벤처 인큐베이팅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			
방산혁신 클러스터사업			지역협의회			경남창원 사업단 방위 산업진흥 센터개소식
방산전문 인력양성 지원사업	계약학과		학생 선발	봄학기 운영		
	전문인력		교육생 선발	교육 개시		
	특성화교			계속참여 학교 선정		학생-참여 기업 매칭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24-1차 모집공고		24-1차 과제선정	24-1차 협약체결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24-1차 모집공고		24-1차 과 제선정	24-1차 협약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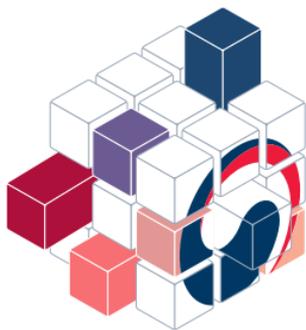
* 지원사업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주관기업 협약체결 (핵심/ 수출연계/ 전략부품)					
		대상기업 모집/선정 (2차)			대상기업 모집/선정 (3차)	
주관기업선정 /협약체결 (국방벤처)	사업공고 (혁신기술)			주관기업선정 /협약체결 (혁신기술)		
주관기업선정 /협약체결						
	기업선정 (3기)/ 24-1차 전용지원 사업공고				24-1차 전용지원 과제선정	
지원기업 선정						
지역협의회					지역협의회	
운영점검			가을학기 운영	운영점검	연차평가	
		운영점검				연차평가
협약 체결, 교육 개시		운영점검				
24-2차 모집공고		24-2차 과제선정/ 협약체결	24-3차 모집공고		24-3차 과제선정	24-3차 협약체결
24-2차 모집공고		24-2차 과제선정	24-2차 협약체결			

2024년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 및 사업

발행일	2024년 2월
발행처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디자인	케이에스센세이션



2024년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 및 사업**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